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1. 심 사 경 과	57
2. 제안설명 요지	57
가. 예산(안) 편성기본방침	57
나. 예산(안) 총규모	59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60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6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62
4. 소위원회 검토보고 요지	65
5. 수정(안) 요지	65
6. 심 사 결 과	65
7. 소수의견 요지	66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1996. 5. 16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1996. 5. 25

다. 상 정 일 자 (제125회 임시회) : 1996. 5. 27

○ 제1차 예결위원회(1996. 5. 27)

-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무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 제2차 예결위원회(1996. 5. 28)

-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소관)

- 소위원회 구성

○ 제3차 예결위원회(1996. 5. 29)

- 19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예결위원회 조정(안) 심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부지사 라 기 정)

가. 예산(안) 편성기본방침

○ 국가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계상

○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최대한 억제

○ 시군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도비지원을 지양하고 도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에 우선 투자

□ 편성 기준

<세입예산>

○ 지방세

- '95 징수실적, 지역내 경제여건 등을 판단하여 계상

○ 세외수입

- 순세게잉여금 정산결과 추가계상액 반영
-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정산결과 반영

○ 국고의존수입

-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재원은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기금 등)

<세출예산>

○ 필수경상경비

-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 기타 법정·의무적 경비

○ 투자사업비

- 국가지원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 부담액
- 도지사 지시사업, 시·군 및 주민건의사업등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에 따른 예산조정

나. 예산(안) 총규모

○ 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886,869,515	100	794,805,726	100	92,063,789	11.6
○ 일반회계	652,952,861	73.6	587,701,886	73.9	65,250,975	11.1
○ 특별회계	233,916,654	26.4	207,103,840	26.1	26,812,814	12.9

- '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868억 6,95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948억 572만 6천원보다 11.6%가 증액된 규모로 요구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1%인 652억 5,097만 5천원이 증가한
 6,529억 5,286만 1천원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인 268억 1,281만 4천원이 증가한 2,339억 1,665만
 4천원 규모임.

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886,869,515	100	794,805,726	100	92,063,789	11.6
일 반 회 계	652,952,861	73.6	587,701,886	73.9	65,250,975	11.1
· 지 방 세	147,741,000	16.6	132,041,000	16.6	15,700,000	11.9
· 세 외 수 입	111,338,087	12.6	92,630,056	11.6	18,708,031	20.2
-경상적세외수입	12,358,767	1.4	9,710,828	1.2	2,647,939	27.3
-임시적세외수입	98,979,320	11.2	82,919,228	10.4	16,060,092	19.4
· 지 방 교 부 세	150,631,844	17.0	148,872,844	18.7	1,759,000	1.2
· 지 방 양 여 금	71,784,581	8.1	57,182,308	7.2	14,602,273	25.5
· 보 조 금	166,410,349	18.7	155,428,678	19.6	10,981,671	7.1
· 지 방 채	5,047,000	0.6	1,547,000	0.2	3,500,000	226.2
특 별 회 계	233,916,654	26.4	207,103,840	26.1	26,812,814	12.9
· 공기업특별회계	201,468,742	22.7	186,524,660	23.5	14,944,082	8.0
-지역개발기금	139,434,032	15.7	129,218,124	16.3	10,215,908	7.9
-공영개발사업	62,034,710	7.0	57,306,536	7.2	4,728,174	8.3
· 기타특별회계	32,447,912	3.7	20,579,180	2.6	11,868,732	9.1
- 의료보호기금	19,005,612	2.1	15,820,457	2.0	3,185,155	20.1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운영관리	2,083,577	0.2	2,200,000	0.3	△116,423	△5.3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558,723	0.4	2,558,723	0.3	1,000,000	39.1
-중평지방공업 단지조성사업	7,800,000	0.9	0		7,800,000	100

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	금 액	%	금 액	%
합 계	886,869,515	100	794,805,721	100	92,063,789	11.6
일 반 회 계	652,952,861	73.6	587,701,886	73.9	65,250,975	11.1
· 인 건 비	48,914,524	7.5	47,953,067	8.2	961,457	2.0
· 물 건 비	43,204,826	6.6	40,306,217	6.9	2,898,609	7.2
· 이 전 경 비	146,941,368	22.5	135,063,217	23.0	11,878,262	8.8
· 자 본 지 출	380,337,813	58.2	339,447,547	57.8	40,890,266	12.0
· 용자 및 출자	9,660,000	1.5	7,584,000	1.3	2,076,000	27.4
· 보 전 재 원	2,320,027	0.4	2,320,027	0.4	0	0.0
· 내 부 거 래	12,555,611	1.9	6,356,776	1.1	6,198,835	97.5
· 예비비 및 기타	9,018,692	1.4	8,671,146	1.5	347,546	4.0
특 별 회 계	233,916,654	26.4	207,103,840	26.1	26,812,814	12.9
· 지역개발기금	139,434,032	59.6	129,218,124	62.4	10,215,908	7.9
· 공영개발사업	62,034,710	26.5	57,306,536	27.8	4,728,174	8.3
· 농어촌소득 개발기금	3,558,723	1.5	2,558,723	1.2	1,000,000	39.1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환경기초 시설운영관리	2,083,577	0.9	2,200,000	1.1	△116,423	△5.3
· 의료보호기금	19,005,612	8.1	15,820,457	7.6	3,185,155	20.1
· 증평지방공업 단지조성	7,800,000	3.3	0	0	7,800,000	1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우 병 수)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6,529억 5,286만 1천원, 특별회계 2,339억 1,665만 4천원, 총 8,868억 6,951만 5천원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양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하여 그중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각종 투자사업에 배분하고 있어 적은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노력이 보이거나 몇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사례별로 살펴 보면,

첫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지원사업의 확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의 변경내시분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매년 당초예산심의시 국회의결이 늦어짐을 이유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한 채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현 수정예산 편성제도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둘째, 세입추계의 현실화 노력

지방세의 경우 157억원 추가 증액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 1,332억 9,7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세입추계는 세수 및 교부세사업 등을 정밀 분석하여 발생예산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매년 추경예산편성이 관례화 됨에 따라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력의 소모는 물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으로 당초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세째,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경비의 추가계상

'96 당초 예산심의시 불요불급한 경비 또는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된 일부경비에

대하여 삭감조치 하였으나, 금회추경예산(안)에 삭감된 예산의 일부가 다시 계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야 할 것으로 봄.

본예산 삭감경비의 추경계상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당초예산삭감액	추경예산계상액	비 고
○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조성	114,000	114,000	P 50
○ 관서당경비 (POOL)	70,000	80,000	P 55
○ 국내여비 (POOL)	100,000	100,000	P 56
○ 민간경상보조 (POOL)	200,000	200,000	P 56
○ 도청어린이집 시설	110,966	75,000	P 93
○ 여성회관 신축부지 진입로 토지 매입비	205,000	212,200	P 207
○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80,000	400,000	P 237

내핵, 예산 감액 사업과다 발생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을 감액하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 취소하여 기확보된 예산을 전액감액 조치하려는 사업의 예산액이 76억여원으로 이는 결국 막대한 예산을 5개월동안이나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음.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거나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예 산 감 액 사 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당초예산승인액	추경예산삭감액	비 고
○ 충북 100년 기념행사 가장행렬 임차료	20,000	20,000	P 91
○ 충북 100년 기념행사 조형물제작 (실시설계비)	11,850	11,850	P 97
○ 충북 100년 기념행사 조형물제작 (시설비)	485,000	485,000	P 97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당초예산승인액	추경예산삭감액	비 고
○ K B S 열린 음악회 유치	60,000	60,000	P 111
○ 충주호수경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1,500,000	1,500,000	P 326
○ 소하천시범 모델 사업	700,000	700,000	P 327
○ 청풍고 가설	4,745,700	4,745,700	P 331

다섯째, 종축장 및 산림환경연구소운영에 대하여

세입에서 농촌진흥원재산매각 수입을 50억여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 종축장운영 21억원과 산림환경연구소운영 14억원, 농촌진흥원에서 15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종축장 및 산림환경연구소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섯째, 주요사업 투자에 대하여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별 재원 배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도민의 개발 욕구에 따라 어떠한 사업이 공익을 더 도모할 수 있고 도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이 될것인지 시군간 균형 개발 차원에서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특히 금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 대규모 사업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년내 완공 여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일곱째, 예산(안)과 관련된 행정질차이행

본 추경예산(안)중에는 조례 및 관련계획 변경등 예산편성에 앞서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행정질차를 이행하지 못해 예산(안)과 그와 관련된 행정질차를 동시에 의결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소위원회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유 명 호 위원장)

가. 심 사 경 위

- 1996년 5월 28일 제2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개최
(심의기준, 심의방법 결정)
- 1996년 5월 28일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개최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의결과
기초로 종합조정)

나. 심 사 결 과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8,868억 6,951만 5천원중
7억 8,053만 8천원을 삭감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

다. 세입세출 조정규모 : 별첨

5. 수정(안) 요지

-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 요지와 동일

6. 심 사 결 과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의결과 요지와 같이
수정(안) 가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액 : 별 첨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없음

- ※별 첨 :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1부.
 - 199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조서 1부.
 - 세입세출 조정규모 1부.